

2025 수출분야 시책설명회





1 수출분야 총괄

2 사업별 지원내용

1 수출분야 총괄 ➡ '25년 예산 및 사업

☞ 중소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해외무대 확장

- '25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원사업 9개와 소상공인 특화지원사업 3개
- 대외환경 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 예산 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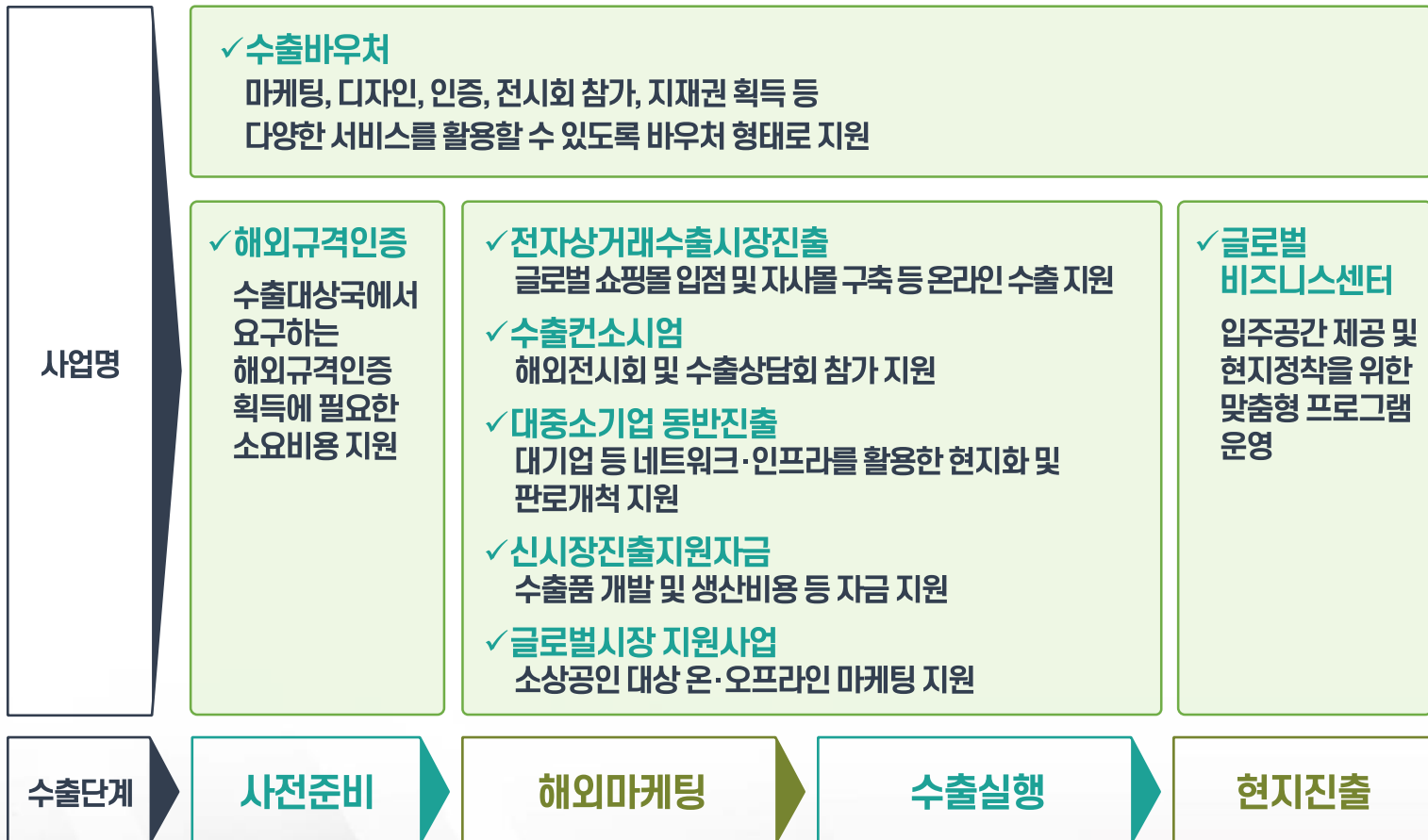
* 지난해 4,272억 원 대비 1,924억 원(45%) 증액한 6,196억 원 편성

분야	사업명	예산(억원)		지원규모
		'24	'25	
중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수출바우처	1,118.6	1,275.6	3,500개사 내외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408	306	4,100개사 내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178	177	14개국 21개소
	대중소기업동반진출	168.5	168.5	1,100개사 내외
	수출컨소시엄	158.5	158.5	1,300개사 내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153	153	605개사 내외
	온라인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	34.5	34.5	2,200개사 내외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비예산	비예산	500개사 내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005	3,825	2,100개사 내외
소상공인	글로벌시장 지원사업	40	90	2,000개사 내외
	소공인 해외오프라인 매장입점	3.6	3.6	200개사 내외
	소공인 역량단계별 수출지원	4	4	50개사 내외
합계		4,271.7	6,195.7	

1 수출분야 총괄 ➔ '25년 예산 및 사업



중소기업 수출단계별 정책 포트폴리오



1 수출분야 총괄 ➡ 주요 정책방향 및 개선사항

1 기존 '제품' 중심의 수출지원체계를 '테크서비스'로 확장합니다.

- 140억원 규모의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신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비용 및 UI, UX 개선 등 현지화 서비스 지원)

2 트럼프 2.0 대응을 위한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운영 및 적용 확대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확대 : 14개국 21개소 → 1개소 추가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법인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정책자금으로 최초 지원



수출분야 총괄 ➡ 주요 정책방향 및 개선사항

3 해외 수출규제 확대에 빈틈없이 대응합니다.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추가(美 FDA 화장품)
- 소액인증 신청기업의 기업당 인증지원 신청 건수 상한 확대 적용
- 수출애로 애로상담 기능 강화 (▲ 전담대응반 인력 및 주요 상담인증 분야 확대, ▲ 수출규제 역량 교육 확대, ▲ 식약처 협업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 확대)

4 부처·민관 협업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 관계부처가 특화분야별로 유망 기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는 부처협업 방식 지원 확대 (267개사 → 350개사)
- 기술성과 혁신성을 검증받은 R&D·창업지원정책 우수 성과기업에 수출바우처 연계 지원
- K-뷰티 국제박람회 민·관 협업 개최, K-POP 한류공연 등 연계 수출상담회·판촉전 등 운영

1 수출분야 총괄 ➡ 주요 정책방향 및 개선사항

5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합니다.

- 제품은 우수하나 수출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전문셀러 활용한 온라인 수출 연계 지원, 수출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에는 글로벌 쇼핑몰 입점 연계 지원
- 대중소기업동반진출사업 참여 유통사의 해외유통망을 활용한 해외판로 개척 기회 제공
- 수출바우처에 강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트랙을 신설하여 다양한 수출서비스 바우처 지원



2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수출바우처

사업개요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수출기업은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활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지원규모

1,275.6억원, 3,500개사 내외

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국제운송비, 무역보험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14개 분야 서비스 지원

모집차수별 특징

-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한도 상이 (내수<30백만원>~강소<100백만원>)
- 연 2,800개사 내외 선정 예정 ('24.12월 1차 모집공고 2,400개사, '25.5월 예정 2차 모집공고 400개사)
- **(지역특화 프로젝트 트랙)**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기업 대상, 300개사 내외 선정 ('25.3월 모집공고 예정)
- **[2025년 신설] (테크서비스 트랙)** 테크서비스 기업 대상, 특화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400개사 내외 선정 ('25.3월 모집공고 예정)
* 특화지원 서비스 :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비용, 소프트웨어·앱·플랫폼 UX·UI 현지화 등

신청

- 신청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 공고일정 : 1차 모집('24.12.30) / 테크서비스 전용('25.3) / 레전드50+ 전용('25.3) / 2차 모집('25.5)
- 문의처 :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

2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 및 자사몰 활용 판매, 온라인 마케팅 및 공동물류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지원규모 306억원, 4,100개사 내외

내용

- **(글로벌 쇼핑몰 활용 판매)**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통해 판매 촉진을 위해 입점,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
- **(자사몰 활용 판매)** 기업의 해외향 자사쇼핑몰 구축을 지원하고, 기구축된 쇼핑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마케팅 등을 지원
-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물류 집적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온라인 수출에 특화된 풀필먼트 이용 등을 지원
- **(온라인수출 패키지)** 온라인수출 역량이 높은 중소기업에 글로벌 쇼핑몰 활용 판매, 자사몰 활용 판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를 패키지로 지원

신청

- 신청처 :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
- 공고일정 : '25년 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온라인수출처(055-751-9764, 02-2130-1484)

2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개요

세계 주요 거점 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현지 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에 사무공간 및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지원규모

14개국 21개소, 268개 독립실, 270여개 공유오피스 운영

내용

- **(현지정착)** 독립 사무공간*, 공유 오피스, 회의실 등 사무공간과 법률·세무·회계 컨설팅, 시장조사 등 현지 정착 지원 서비스 제공
 - * 입주기업 임차료 지원 : 1년차 80%, 2년차 50% 지원
- **(특화사업)** 현지 진출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제품 현지화 등 GBC 거점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청

- 신청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공고일정 : 연중 수시 접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685, 9673~4)

2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사업개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해외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역량은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지원규모

168.5억원 1,100개 내외

내용

- **소비재**: 글로벌 한류행사 및 한류콘텐츠, 유통 대기업 보유 현지 온·오프 유통망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 뷰티·푸드·의류·생활용품·의약품 등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
- **산업재**: 주관기업의 현지법인 및 영업망, 기술력과 연계 中企 해외법인 설립, 컨설팅, 해외실증(PoC) 등 현지화 지원
 - 산업재 또는 서비스 등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부품·제품

신청

- 신청처: 상생누리 누리집(www.winwinnuri.or.kr)
- 공고일정: '25년 1월, 4월(필요시 상시 공고)
 - * 참여 중소기업의 경우, 동반진출 과제 주관기업에서 별도 공고 및 모집
-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473, 8764)

2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수출컨소시엄

사업개요

유사 업종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 업종별 협단체, 수출유관기관 등이 주관단체가 되어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지원규모

158.5억원, 80개 내외 컨소시엄
* 컨소시엄당 15개사 내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3단계로 구성하여 해외시장개척 활동 지원
- 공통비용의 일부(70% 이내) 지원

사전준비(1단계)

현지시장조사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등 사전비용



현지파견(2단계)

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
(부스임차, 장치, 차량 등) 현지파견 비용



사후관리(3단계)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국내 업체방문 등 사후관리 비용

신청

- 신청처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누리집(www.smes.go.kr/sme-expo)
- 공고일정 : 컨소시엄 별 개별 모집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 02-2124-3291, 3292, 3294~7

2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개요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증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확대를 촉진

지원대상 전년도 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제한 없음

지원규모 153억원, 605개사 내외

내용

- **(인증획득비 지원)**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최대 1억원)

지원 대상 인증

패스트트랙

유럽CE(전기전자, 통신,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미국FDA(의료기기 class 1), 국제 HALAL(식품 등) + (24년 추가) 미국FDA(화장품)

일반트랙

패스트트랙 인증을 제외한 540여 종 인증

- **(인증 애로 해소 지원)**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을 통해 주요 인증분야에 대해 상시 애로 접수 및 상담을 지원하고, 필요시 교육·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 유럽(CE, CPNP, REACH, RoHS), 미국(FDA, NRTL, FCC), 중국(NMPA, CCC), 일본(PSE), 베트남(DAV), 국제(IECEE, HALAL, IECEX, GRS) 등

전담대응반 문의방법

유선 1577-9911

홈페이지 smes.go.kr/globalcerti

모바일 카카오톡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신청

- 신청처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smes.go.kr/globalcerti)
- 공고일정 : (일반트랙) 1, 5, 8월 (패스트트랙) 1월부터 상시 모집
- 문의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사업단(02-2164-0173~8)

2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개요

온라인으로 손쉽게 B2B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 '고비즈코리아'를 운영하고, 입점기업 대상 온라인 마케팅 및 수출계약 대응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지원규모

34.5억원, 2,200개사 내외

※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이란?

-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거래 활성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시작된 국내 대표 B2B 수출 플랫폼
- 입점기업은 고비즈코리아에 상품을 등록하여 고비즈코리아를 이용하는 해외바이어에게 무료로 상품 노출 및 해외바이어에게 직접 거래를 제안할 수 있으며,
- 해외바이어는 국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거래 가능

내용

- **수출계약 대응지원** :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일어나는 B2B 거래에 대해 수출 전문가가 중소기업에 도와 해외바이어 대응을 보조
- **고비즈 수출지원** : 고비즈코리아 입점기업에 상품페이지 제작, 해외바이어 알선,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수출시장 진출 지원

신청

- 신청처 :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
- 공고일정 : '25년 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온라인 수출 : 055-751-9744, 9757)

2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사업개요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금융·R&D 등의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기존 수출기업 지정제도인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을 통합하여 운영('23~)

지원대상

'24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 수출 실적에 따라 4단계로 구분
* (유망) 10~100만불 미만, (성장) 100~500만불 미만,
(강소) 500~1,000만불 미만, (강소+) 1,000만불 이상

지원규모

500개사 내외
(지정기간) 선정일 ~ '26.12.31

내용 공통사항 (유망~강소+)

- (수출지원사업 우대) 수출바우처사업 자동 선정,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수출컨소시엄사업 등에 가점 우대
- (수출보증·보험) 수출보증·보험 한도우대, 보증료 할인 등
- (금리·환거래) 시중은행 대출금리 및 수수료, 환전 수수료 우대 등

● 강소, 강소+단계 추가지원 (유망, 성장단계는 해당없음)

- (정책자금) 중진공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 및 대출한도 우대
-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우대
- (지자체) 지자체별 수출프로그램 지원

신청

- 신청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25년 1차 수출바우처사업 신청기업의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 프로젝트'에도 자동 신청됨
- 공고일정 : '24.12.30
- 문의처 :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

2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개요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사업 구분	지원대상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최근 1년) 중소기업 또는 정부지자체 수출지원사업에 참여기업 등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최근 1년) 중소기업

지원규모

3,825억원, 2,100개사 내외
* 이차보전 2,000억원 별도

내용

구 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
융자한도	▪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융자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2년 거치)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또는 고정금리)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담보: 4년 거치, 신용: 3년 거치)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2년 거치) ▪ (이차보전) 3년 만기일시상환
융자방식	▪ 직접대출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이차보전) 시중은행 대출금리에서 3%p 금리 인하

신청

- 신청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공고일정 : '24.12.26(신청·접수 : '25.1.2.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문의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

2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글로벌시장 지원사업

사업개요 소상공인 온라인 수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으로 해외 진출 성공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지원규모 90억원, 2,000개사 내외

내용

-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 준비에 필요한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해외쇼핑몰 입점·판매 지원 및 현지 글로벌 쇼룸 등 운영
- **(준비글로벌패키지)**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상세페이지, 번역, 입점지원 등)을 구성, 글로벌 시장 온라인 진출 준비 지원
- **(실전해외쇼핑몰입점)** 소상공인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후의 마케팅 및 물류 등 필수항목 지원
- **(도약글로벌쇼룸)** 소상공인 해외 오프라인 시장 진출 성공을 위해 해외 현지 체험형 팝업스토어 운영 및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지원

신청

- 신청처 :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 공고일정 : '25년 1월 ~ 3월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042-363-7782~4)

2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소공인 해외오프라인 매장입점

사업개요 유망소공인의 新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 소공인 전용 온·오프라인 매장 개점·운영하고 입점에 필요한 콘텐츠 등 연계 지원

지원대상 10인 미만 제조업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규모 3.6억원, 200개사 내외

내용

- 해외 오프라인 매장(소공인 전용) 입점 지원, e커머스 內 소공인 기획전 입점 등
- < 세부지원항목 >

지원항목	지원내용
오프라인 매장입점	· 해외 오프라인 매장입점 및 판촉지원, 제품 홍보 등
e커머스 기획전 입점	· 해외 온라인 쇼핑몰 內 소공인특별기획전 개최 및 입점, 판촉지원, 마케팅 등

신청

- 신청처 :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 공고일정 : '25년 3월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실(042-363-7902, 7905)

2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소공인 역량단계별 수출지원

사업개요

소공인 수출 역량단계별(성장초기, 성장, 도약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 판로 확대 및 글로벌 소공인 육성

지원대상

10인 미만 제조업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규모

4억원, 50개사 내외

내용

- 사업선정 후 전문가 사전진단을 통해 참여기업의 역량단계를 성장초기, 성장, 도약초기, 도약으로 분류하여 단계별 맞춤 지원
- <역량 단계별 지원(안)>

역량단계		성장초기	성장	도약초기	도약
기준	매출(수출) (3개년 합계)	1억 이하	10억 이하	50억 이하	50억 이상
	박람회 참여	간접참여	직접참여	직접참여	직접참여
	기 타	판로진출 MOU	바이어 계약	현지시장분석	해외마케팅 구축
지 원(안)		· 제품 리뉴얼 · 오프라인 매장 입점지원 · 마케팅전략지원	· 홍보컨텐츠개발 · 바이어 매칭 · 해외박람회참여 · 인증 지원	· 인플루언서매칭 · 온라인홍보강화 · 타깃국가시장 인지도제고	· 수출국 확대 - 시장분석 - 팝업스토어입점 - 국제박람회지원

신청

- 신청처 :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 공고일정 : '25년 4월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실(042-363-7902, 7905)

감사합니다.



환율 및 수출금융 분야 정책설명회

중소벤처기업부/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술보증기금 | 무역보험공사 | 수출입은행 | 기업은행



1

**최근
환율 동향 및
지원방향**

2

**사업별
지원내용**



1. 최근 환율 동향 및 지원방향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 최고치 갱신



- 전세계 달러화 강세 등에 따라 '09.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09.3.16.	→	'24.12.31.	→	'25.1.2.
1,488.0원		1,477.0원		1,466.6원

- '24.12.27(금) 장중 원/달러 환율은 1486.7원까지 상승하는 등 원화 가치 변동은 심화되는 중



수익성 악화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증가

→ 제품 가격에 반영됨에 따른 수익성 감소, 수출가격 책정 애로

자금 부담 증가

환위험 리스크 상승, 외환 결제 비용 증가에 따른 자금 부담 증가

→ 환차손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

해외진출 기업의 비용 증가

해외 현지에 진출한 기업은 임금, 원자재, 운영비용 등 증가

→ 경영 부담 발생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유동성 부족 등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



1. 최근 환율 동향 및 지원방향

高환율 피해기업
유동성 공급 강화

- 高환율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원) 및 기보 긴급경영안정보증(3,000억원) 집중 지원

원·부자재 수입기업
부담 경감

- 조달청 원자재 대여 담보우대보증(기보)
- 원하청 기업간 환율변동을 반영한 납품대금 연동계약 기준 확산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 수출기업 정책자금 확대
 - * '24년 중진공 0.2조원, 기보 0.5조원
 - '25년 중진공 0.4조원, 기보 0.5조원
- 수출촉진자금대출(수은)
- 수출신용보증(무보)
- 수출플러스보증부대출(기업은행)

해외투자·진출기업
자금 지원 확대

- 해외법인 설립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 신규 추진(중진공)
- 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기보)
 - * '24년 100억원 → '25년 300억원

환헷지 프로그램 지원

- 환변동보험(무보), 통화전환옵션(수은), 선물환, 환위험관리 컨설팅(기업은행)
- 수출바우처 활용 무역보험·보증 가입 지원(중진공)



2. 사업별 지원 내용

1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피해기업 및 환율피해 등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자금용도] 재해피해 복구 및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구분	용자조건
용자방식	직접대출
용자한도	(운전) 연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용자기간	(운전) 5년 (2년 거치)
용자금리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 [지원방향] 재해피해 발생 및 일시적 경영애로에 따른 피해가 확인되는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영 정상화에 기여
 - 高환율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환리스크 대응을 위한 유동성을 집중 공급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지원 규모

2,500억원

신청·접수

'25.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처

- 중진공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진공 누리집 (www.kosmes.or.kr)



2. 사업별 지원 내용

2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자금용도] 수출품 생산 설비도입 및 생산 운전자금 등

구분	용자조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
용자방식	직접대출	직접대출, 이차보전
용자한도	연간 5억원	(직접대출) 30억원 (운전 10억원) *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용자기간	(운전) 5년 이내 (2년 거치)	(시설) 10년 이내 (담보 : 4년 거치, 신용 : 3년 거치) (운전) 5년 이내 (2년 거치) * 이차보전은 3년 만기 일시상환
용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이차보전을 최대 3%

- [지원방향]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구축에 기여
 - 수출기업 중 환율급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증가 등 운영자금 소요 기업에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동성을 집중 공급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수출 10만불 미만(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또는 수출 10만불 이상(수출기업 글로벌화)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규모

'25년 용자 3,825억원
* 이차보전 2,000억원 별도

신청·접수

'25.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처

- 중진공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진공 누리집 (www.kosmes.or.kr)



2. 사업별 지원 내용

3 수출바우처 -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개발, 전시회, 통·번역 등 14개 분야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디자인 개발, 홍보, 특허·지재산권, 무역보험·보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14개 서비스 분야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 수출규모별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단계로 구분하여 국고보조한도 30~100백만원까지 지원(보조율 50~70%)
- **[보험·보증]** 14개 메뉴판 중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통해 단기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을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 단기수출보험 : 참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수출신용보증 : 참여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물품 제조, 조달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대출받는 경우 무역보험공사에서 연대보증
 - 환변동보험 :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회수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 제거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규모

1,275.6억원

신청·접수

- (1차) '25.1.7~1.23
- (2차) '25.5월(예정)
- 수출바우처 누리집
(www.exportvoucher.com)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 안내센터
(055-752-8580)



2. 사업별 지원 내용

4 긴급경영안정보증

고환율 등 대외·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받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방안 마련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	Track1(지역산업위기기업)	Track2(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대상 기업	- 대·중견기업 등 대규모 납품처의 경영난 등에 따라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① 기업회생 신청·서비스 중단 이커머스*와 '24년 거래실적을 보유 직·간접 피해기업 *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	- 대외·경제환경 변화로 일시적 경영애로가 발생한 아래 기업 ①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우려 기업 ②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우려 기업 - 고환율 등 복합위기 피해 수입·수출 기업 * (수입) 당기매입액 대비 원자재 수입액 20% 이상 (수출) 당기매출액 대비 수출금액 20% 이상 ③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기업 ④ 기보가 인정한 지원 필요기업

지원 규모

3,000억원

신청·접수

연중 상시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www.kibo.or.kr)

- Track1(지역산업위기기업) : (기존보증) 원칙적으로 1년 전액 만기연장 (신규보증) 보증비율 : 100%, 보증료율 0.3%p 감면
- Track2(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보증비율 : 90% 부분보증, 보증료율 0.3%p 감면



5 조달청 원자재 대여 담보어음보증

기업의 조달청과 체결한 원자재 대여 등 상거래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지원

- **[대상채무]** : 기업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재화 등(용역거래포함)을 구매·대여함으로써 조달청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
- **[보증종류]** : 담보어음보증
- **[보증상대처]** : 조달청
- **[보증기간]** : 최장 1년 이내로 하되, 물품공급계약서 상 대여기간 만료일
- **[우대사항]** : 보증비율(95% ↑), 보증료율 감면(0.3%p) 등 기업 요건에 따라 가장 최적화된 보증우대 적용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신청·접수

연중 상시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www.kib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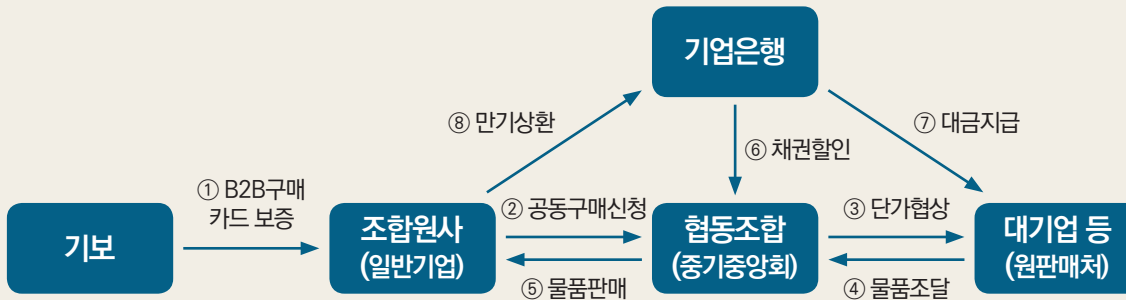


2. 사업별 지원 내용

6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약보증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은행이 기금에 특별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에 대해 우대보증 지원

- **[대상채무]** :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및 중기중앙회에 원·부자재 또는 상품의 공동구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전채무(근보증)
- **[기본구조]** : 협동조합이 공동구매(조달) 주체이자 판매처 역할 수행
 - *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이 신청시 중기중앙회가 공동구매 주체가 됨



- **[운영방식]** : 기업은행의 “B2B구매카드 대출 ” 로 운용
- **[우대사항]** : 보증비율 95%, 보증료 0.5%p 감면, 금리 1.0%p 감면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접수

연중 상시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www.kibo.or.kr)



2. 사업별 지원 내용

7 수출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확대

혁신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여 수출잠재력 확충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대상	요건
수출예상기업	• 향후 수출 발생 예상(수출계약서 등 보유) 또는 수출실적 비율 10%미만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 비율 10%이상
수출주력기업	• 수출실적 비율 30%이상 또는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수출우수기업	• 수출실적 5백만불 이상
수출선정기업	- 수출예상 · 실적 · 주력 · 우수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다음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브랜드K',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조달청) 'G-PASS 기업' -(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중진공) '온라인 수출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기금) '수출다변화 성공기업'

지원 규모

5,000억원

- 지원대상에 따라 우대사항 차등 적용하여 수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원대상	보증료율	보증비율
수출예상기업	△0.2%p	95%
수출실적기업	△0.2%p	90%
수출주력기업	△0.3%p	90%
수출우수기업	△0.4%p	95%
수출선정기업	△0.3~0.4%p	90~95%

신청·접수

연중 상시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www.kibo.or.kr)



2. 사업별 지원 내용

8 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이를 통한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

- **[운용방식]** : 해외투자자금보증과 해외사업자금보증으로 구성
 - (해외투자자금보증) 국내지배기업이 현지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기보가 보증(대출보증)
 - * ① 외국기업 지분 취득자금 ② 해외종속기업에 1년 초과 장기자금 대여
 - (해외사업자금보증) 해외법인이 현지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국내기업의 주거래은행이 지급보증(Stand-by L/C)을 하고 그 지급보증에 대해 기보가 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 **[보증심사]** : 피보증인인 국내지배기업을 기준으로 심사
 - * 해외종속기업은 실제 파악이 가능한 신용조사서(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의 해외기업 신용조사서)를 활용

지원 대상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① 국내지배기업(법인 또는 개인기업) : 신기술사업자
- ② 해외종속기업(법인기업) : 국내지배기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예정) 기업

지원 규모

300억원

신청·접수

연중 상시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www.kibo.or.kr)



2. 사업별 지원 내용

9 환변동보험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제도

● 환변동보험 상품별 안내(수출 기준)

구분	내용
일반형*	• 환율 하락시 손실을 보상,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완전보장 옵션형	•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금 납부 의무 면제, 환율 하락시 하락분 전액 보상
부분보장 옵션형	•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금 납부 의무 면제, 환율 하락시 일정 수준까지 보상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25.6월말까지 보험료 30% 추가 할인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대상통화

USD, JPY, EUR, CNY(일반형 기준)

신청·접수

연중 상시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3884



2. 사업별 지원 내용

10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품 제조 등에 필요한 무역금융 및 기타 수출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서비스

● 주요 계약사항

구분	내용
보증계약자	금융기관 및 수출유관기관
보증하는 채무	대출원금 및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
보증비율	90% 이내
보증기간	1년 이내
보증약정	KSURE와 수출기업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서명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신청제한조건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

신청·접수

연중 상시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3884



2. 사업별 지원 내용

11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수출기업이 수입자 제한 없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주요 계약사항

구분	내용
보증계약자	금융기관
담보위험	수출기업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대상거래	모든 수입자와의 대출기간 180일 이내 무신용장 일반수출거래
보증비율	(단, 대출실행일은 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
보증약정	90%이내
단기수출보험 가입 의무	주채무자(수출기업)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수출기업의	연계 가입 선택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	없음
보증서 효력	보증기간 중 대상거래 전체
보증료	연 1회 선납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신청제한조건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

신청·접수

연중 상시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3884



2. 사업별 지원 내용

12 통화전환옵션

외화 결제 수요가 많은 기업의 경우 매출자산과 부채 항목의 조정(matching) 및 환변동위험 헤지(hedge)를 통한 환위험관리

- **대상 통화** : 원화 및 외화(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 **전환횟수** : 대출기간 중 2회
- **전환가능기간** : 대출만기일 1개월 전까지
- **수수료** : 무료
- **전환 후 금리** : 통화전환신청 접수일의 해당통화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 **전환 후 환율** : 통화전환신청 접수일의 매매기준율

지원 대상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을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여신 취급시 해당 특약을 신청한 기업

신청·접수

대출 신청시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거래중인 대출 담당자 앞 문의



2. 사업별 지원 내용

13 수출촉진자금대출

지원 대상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 지원

● 대출기간

- 시설투자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5년 이내
- 기술개발, 수출기업인수, 제작자금, 지식재산권 구입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의 경우 : 3년 이내

● 대출한도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수출기업인수 용도는 실소요자금의 50% 이내
- 협조대출인 경우 실소요자금의 40% 이내

문의처

- 중소중견금융1부
(섬유·의류, 석유화학, 제지 등) :
02-6252-3436
- 중소중견금융2부
(음식료,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
02-6252-3468



2. 사업별 지원 내용

14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
- **대출한도**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9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70% 이내
 - 단, 기업별 대출한도는 350억원 이내이며, 수출규모 등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

지원 대상

지원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문의처

- 중소중견금융1부
(섬유·의류, 석유화학, 제지 등) :
02-6252-3436
- 중소중견금융2부
(음식료,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
02-6252-3468



2. 사업별 지원 내용

15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 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 대출한도

- (수출계약금액-기수령금액)×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 단, 서비스산업 중 러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홍보비용 등)의 50% 이내

지원 대상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문의처

- 중소중견금융1부
(섬유·의류, 석유화학, 제지 등) : 02-6252-3436
- 중소중견금융2부
(음식료,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 02-6252-3468



2. 사업별 지원 내용

16 선물환

사전 환율 확정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완화

- 예상 수출입 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환율을 확정하고 거래 만기 당일 환율과 관계없이 미리 확인한 환율로 환전
 -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시스템(IBK FXON)을 통해 거래 가능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접수

연중 수시,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문의처

기업은행 고객센터 1588-2588



2. 사업별 지원 내용

17 환위험관리 컨설팅

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 수출입기업의 환위험관리 지원

- 수출입기업의 외환 관리 및 결제 상황 등을 상담하여 환위험 진단 후 기업에 적합한 환위험관리 솔루션 제공
 - 방문 또는 비대면(ZOOM) 방식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진행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접수

연중 수시,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문의처

기업은행 고객센터
1588-2588



2. 사업별 지원 내용

18 수출 플러스 보증부대출

수출기업 및 수출 선도기업 지원, 성장단계별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

- **운전자금 지원**(당행 대환대출 불가)
 - 동일기업당 최대 5억원
 - 최대 연 1.5%p 금리감면/보증비율 90% 및 최대 3년간 보증료 0.2% 감면
- **대출기간**: 신용보증서 만기일 이내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부과시기**: 고객이 지정한 대출기일(또는 대출취급일 응당일) 기준, 매월 응당일에 납입
- **부대비용**: 인지세, 보증료 및 중도상환해약금
- **연체이자율**: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p를 더하여 적용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 연 11%, 그 외 13%)

지원 대상

내수/수출초보/수출유망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관련 보증서* 보유 중소기업

* 「수출기업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신용보증서

지원 규모

1,500억원(보증규모 기준, 보증비율 90%)

신청·접수

연중 수시,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문의처

기업은행 고객센터
1588-2588



2. 사업별 지원 내용

19 무역금융

물품 및 용역의 수출과정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제조·가공 또는 완제품 국내구매에 필요한 자금지원

- 용도별 지원(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구매자금) / 포괄 지원
 - 현금 또는 내국신용장 개설
- 낮은 이율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신용평가 등급, 담보인정비율, 보증한도 등에 따라 상이
- **대출기간** : 생산/원자재자금/포괄금융 180일 이내, 완제품 구매자금 30일 이내.
신용장 기준의 경우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부과시기** : 고객이 지정한 대출기일(또는 대출취급일 응당일) 기준, 매월 응당일에 납입
- **부대비용** : 인지세, 보증료
-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p를 더하여 적용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 연 11%, 그 외 13%)

지원 대상

직접 수출기업/간접 수출기업
(수출용 원자재, 완제품을 국내에 납품하는 기업)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접수

연중 수시,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문의처

기업은행 고객센터
1588-2588



2. 사업별 지원 내용

20 IBK강소기업대출

수출 분야에서 혁신성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업구매자금대출, 무역금융
- 최대 연 1.0%p 금리감면, 외환수수료(수출환어음 매입 환가료, 수입신용장 개설 수수료) 우대
- **대출기간** : 운전자금 1년, 시설자금 15년, 결제성자금 180일 이내.
무역금융의 경우, 생산/원자재자금/포괄금융 180일 이내, 완제품 구매자금 30일 이내 또는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부과시기** : 고객이 지정한 대출기일(또는 대출취급일 응당일) 기준, 매월 응당일에 납입
- **부대비용** : 인지세, 보증료 및 중도상환해약금
-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p를 더하여 적용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 연 11%, 그 외 13%)

지원 대상

USD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금액 USD
10만불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접수

연중 수시,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문의처

기업은행 고객센터
1588-2588



21 ▶ 납품대금 연동제

중소 수탁기업들이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조정받을 수 있도록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 **납품대금 연동제란**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 **수위탁거래란**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에 포함
- **적용대상 거래** :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 주요 원재료란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 납품대금이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제조등및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말함(부가가치세 포함)
 - * 1회 발주 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총 납품대금이 기준
 - 원재료의 정의와 범위 :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단, 노무비와 경비는 제외됨



2. 사업별 지원 내용

● 연동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
-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 단,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 1회 발주당 납품기간이나 계약 경과기간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기간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 단,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 1회 발주당 납품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금액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 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발표(23.9.11) 하였으며, 그 취지와 사유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한 고환율 대응 방안 : 환율을 반영한 기준 지표 설정

-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원화표시 가격으로 설정하거나 고시환율을 명시하는 등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정하여 환율변동을 반영할 수 있음

● 연동약정 예시 : 계약 체결(5월)후 조정일(6월)이 도래한 경우

구분	전월 LME 평균(USD)	프리미엄(USD)	환율(원/USD)	전기동 고시가 (원)
기준시점(2024.4)	8,675.63	160	1,343.68	11,872,000
비교시점(2024.5)	9,482.43	160	1,381.18	13,318,000

* 백원 단위 반올림



2. 사업별 지원 내용

납품대금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납품대금 연동 대상목적물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1)
2. 납품대금등 연동 대상주요 원재료	동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 고시가) ※ 전기동고시가(원) = [전월 LME 동평균가격(USD) + 프리미엄(USD)] × 환율(원/USD)
4. 원재료 가격의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조정일의 전전월 (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평균)
5. 조정요건	±10% 이상 변동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9. 납품단가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2. 사업별 지원 내용

- (CASE1)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내 환율 반영

• 조정요건 충족여부 판단

* 전기동고시가(원) = [전월 LME 동평균가격(USD)+프리미엄(USD)] × 환율(원/USD)

기준시점(4월) 고시가 : $[8,675.63(\text{USD}) + 160(\text{USD})] \times 1,343.68(\text{원/USD}) = 11,872,000\text{원}(\text{백원단위 반올림})$

비교시점(5월) 고시가 : $[9,482.43(\text{USD}) + 160(\text{USD})] \times 1,381.18(\text{원/USD}) = 13,318,000\text{원}(\text{백원단위 반올림})$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변동률은 12.2%이므로 조정 요건인 ±10% 충족

$\{(13,318,000 - 11,872,000) / 11,872,000\} \times 100 = 12.2\%$

→ 납품단가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 조정될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천원

기준시점(4월) 납품단가 = $11,872\text{천원/ton} \times 2\text{kg} + 5,000\text{원} = 28,744\text{원}$

비교시점(5월) 납품단가 = $13,318\text{천원/ton} \times 2\text{kg} + 5,000\text{원} = 31,636\text{원}$

∴ 동 LME 고시가 및 환율 상승에 따라 $31,636\text{원} - 28,744\text{천원} = 2,892\text{원}$ 증액 조정

- (CASE2)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내 환율 미반영

• 조정요건 충족여부 판단

* LME동 가격 = 전월 LME 평균(USD)

기준시점(4월) 고시가 : 8,675.63USD

비교시점(5월) 고시가 : 9,482.43USD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변동률은 9.3%이므로 조정 요건인 ±10% 미충족

$\{(9,482.43 - 8,675.63) / 8,675.63\} \times 100 = 9.3\%$

∴ 납품단가 조정 요건 불성립으로 납품단가 미조정



2. 사업별 지원 내용

●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 (목적)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비중 확인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규모) 1,000개사 내외
-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탁·수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원수급사업자
-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대상	지원금액	지원규모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내 원재료(재료비)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확인 및 확인서 발급	수탁기업 (수급사업자)	정부 지원 100%	1,000개사 내외
연동약정 컨설팅	제도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위탁·수탁기업 (원·수급사업자)		

*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컨설팅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가능

신청·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처에 관련서류 제출)

접수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

(납품대금연동제.kr) 모집 공고문 참조

문의처

기관명	접수처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pis@win-win.or.kr	02-368-8962, 8929, 8939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aidenkim@innobiz.or.kr	031-628-9680
중소기업융합중앙회	wang407@k-saca.or.kr	042-331-0571, 0564
중소기업중앙회	pygyrom@kbiz.or.kr	02-2124-3206, 3207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kg24@mainbiz.or.kr	02-2230-2179